



촉법소년 기준, '만 14세 미만'에서 '만 13세 미만'으로



〈법무부 과천 청사〉

법무부가 '촉법 소년의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'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.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·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.

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. 이들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 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. 현재는 만 13세 청소년도 촉법 소년 대상에 포함된다. 그러나 앞으로는 만 13세 청소년이

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뜻이다.

이는 청소년 흉악 범죄가 늘면서, '교화 대상'인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.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. 다만 청소년 범죄를 교화가 아닌 형벌로만 다스린다고 해서,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거나 청소년 흉악 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.

이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 약 4개월가량 연구한 끝에 만 13세로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. 현행 만 14세와 윤 대통령 공약인 만 12세의 절충안이라는 분석도 있다. 법무부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교정·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마련해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.

(출처/조선일보)